

(20) 지방세 지출보고서(2018년도 실적기준)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8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4,827,510,820
	비과세	3,158,397,650
	감면	1,669,113,170
지방세 징수액(B)		25,035,448,420
비과세·감면율(A/A+B)		16.2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8년(결산)	비중
총 계		4,827,510,820	100
1	일반공공행정	1,986,413,750	41
2	공공질서 및 안전	21,587,970	0
3	교육	30,882,400	1
4	문화 및 관광	54,107,030	1
5	환경보호	2,071,580	0
6	사회복지	270,768,740	6
7	보건	5,332,390	0
8	농림해양수산	750,565,020	16
9	산업·중소기업	422,077,430	9
10	수송 및 교통	108,451,300	2
11	국토 및 지역개발	45,103,490	1
12	과학기술	0	0
13	국가	986,885,840	20
14	외국	50,000	0
15	기타	143,213,880	3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8년(결산)	비중
총 계		4,827,510,820	100
	보 통 세	4,760,787,140	99
	취득세	2,477,434,200	51
	등록면허세	54,192,390	1
	레저세	0	0
	지방소비세	0	0
	주민세	19,307,370	1
	재산세	2,050,300,150	43
	자동차세	159,553,030	3
	지방소득세	0	0
	담배소비세	0	0
	목 적 세	66,723,680	1
	지역자원시설세	66,723,680	1
	지방교육세	0	0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7년(결산)	‘18년(결산)	증감액
총 계	3,698,075,320	4,827,510,820	1,129,435,50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724,059,240	1,627,627,300	903,568,06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82,080	28,180	-53,90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24,397,060	24,195,780	-201,28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10,176,410	334,562,490	24,386,08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2,320	0	-12,32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7,687,650	21,587,970	3,900,32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9,128,440	18,837,040	9,708,60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1,515,590	12,045,360	529,770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59,259,450	50,453,200	-8,806,25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626,580	1,618,290	-8,29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92,200	2,035,540	943,340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941,900	2,071,580	129,6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7,530,000	7,500,000	-3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145,980,060	151,416,070	5,436,01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29,920	13,220	-16,70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41,286,570	43,284,290	1,997,7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728,800	796,290	67,490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6,373,170	1,717,420	-4,655,75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45,717,680	36,760,440	-8,957,24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850,000	0	-850,00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8,902,600	19,145,730	243,13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915,470	1,208,740	293,27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8,347,730	8,926,540	578,81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97,340	5,332,390	35,05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250,925,370	318,154,810	67,229,44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34,330,290	114,603,040	-19,727,25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90,593,010	134,741,030	44,148,020
임업인에 대한 감면	7,038,260	2,680,000	-4,358,26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360	0	-36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00,250	191,640	-8,610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73,870,600	39,861,740	-34,008,86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96,564,480	102,912,840	6,348,360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25,530,000	0	-25,530,00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43,527,550	37,419,920	-6,107,6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192,767,360	54,796,820	-137,970,540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30,000	727,790	697,79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70,880,490	362,667,180	291,786,69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57,790	58,810	1,020
법인,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12,500	0	-112,50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964,010	0	-2,964,01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428,390	3,826,830	-2,601,56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58,895,890	51,035,010	-7,860,88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37,909,020	47,242,630	9,333,610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13,905,920	0	-13,905,92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1,007,690	667,600	-340,09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9,495,100	9,506,060	10,96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854,410	13,442,700	11,588,290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0	20,533,220	20,533,22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20,679,330	10,128,480	-10,550,8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6,056,980	999,090	-5,057,890
국가에 대한 비과세	1,033,649,710	986,868,260	-46,781,450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451,840	0	-2,451,84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83,420	17,580	-65,840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0	50,000	50,000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0	89,244,220	89,244,22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5,208,280	11,235,420	-3,972,86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6,457,890	7,261,930	-19,195,96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24,403,290	23,320,130	-1,083,16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950,540	6,824,300	5,873,760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1,129,200	1,123,960	-5,24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855,760	856,270	51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281,450	2,044,690	-236,76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411,570	404,810	-1,006,76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629,060	898,150	269,09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986,413,75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1,627,627,300
		취 득 세	977,431,640
		등록면허세	1,973,000
		주 민 세	1,500,000
		재 산 세	597,237,140
		자동차세	5,176,150
		지역자원시설세	44,309,37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8,180
		재 산 세	28,180
		-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24,195,780
		취 득 세	3,581,820
		등록면허세	36,000
		재 산 세	18,287,590
		지역자원시설세	2,290,37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334,562,490
		재 산 세	334,562,49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21,587,970
5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21,587,970
		자동차세	21,587,970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교 육		합 계	30,882,400
6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18,837,040
		취 득 세	15,659,840
		등록면허세	13,500
		주 민 세	1,050,000
		재 산 세	1,879,460
		지역자원시설세	234,240
7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2,045,360
		주 민 세	800,000
		재 산 세	8,642,990
		지역자원시설세	2,602,370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54,107,030
8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50,453,200
		취 득 세	8,470,930
		등록면허세	9,000
		주 민 세	5,600,000
		재 산 세	32,769,330
		지역자원시설세	3,603,940
9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 계	1,618,290
		재 산 세	1,151,570
		지역자원시설세	466,7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 도서관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	
1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2,035,540
		재 산 세	2,035,540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2,071,580
11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2,071,580
		재 산 세	2,071,58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70,768,740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 계	7,500,000
		주 민 세	7,500,000
13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151,416,070
		취 득 세	68,706,970
		자동차세	82,709,1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1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3,220
		재 산 세	11,540
		지역자원시설세	1,680
		-	
1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8,926,540
		등록면허세	18,000
		주 민 세	900,000
		재 산 세	6,310,690
		지역자원시설세	1,697,850
		-	
1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43,284,290
		취 득 세	38,657,350
		재 산 세	4,626,940
		-	
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796,290
		재 산 세	750,770
		지역자원시설세	45,520
		-	
18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 계	1,717,420
		재 산 세	1,717,420
		-	
1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소 계	36,760,440
		취 득 세	11,337,370
		주 민 세	150,000
		재 산 세	135,25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자 동 차 세	25,136,160
		지역자원시설세	1,660
		-	
2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소 계	19,145,730
		재 산 세	15,526,140
		지역자원시설세	3,619,590
		-	
2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1,208,740
		재 산 세	440,740
		등록면허세	768,000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보건		합 계	5,332,390
22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소 계	5,332,390
		재 산 세	5,332,39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750,565,020
23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소 계	318,154,810
		취 득 세	315,590,000
		재 산 세	2,564,810
		-	
		-	
24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소 계	114,603,040
		취 득 세	107,940,050
		재 산 세	6,662,99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2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134,741,030
		취 득 세	118,113,360
		재 산 세	8,343,310
		등록면허세	8,284,360
		-	
26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 임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2,680,000
		취 득 세	2,680,000
		-	
27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아·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191,640
		재 산 세	191,640
		-	
28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39,861,740
		등록면허세	39,861,740
		-	
29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소 계	102,912,840
		취 득 세	49,165,950
		주 민 세	48,420
		재 산 세	53,698,470
		-	
3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37,419,920
		취 득 세	30,935,910
		재 산 세	6,484,010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422,077,430
3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소 계	54,796,820
		취 득 세	46,284,200
		등록면허세	112,500
		재 산 세	8,400,120
		-	
3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58,810
		재 산 세	58,810
		-	
33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 계	3,826,830
		취 득 세	3,246,480
		자동차세	580,350
		-	
34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 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1·2·4·5·6·7호)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	소 계	727,790
		등록면허세	727,79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3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소 계	362,667,180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6호, §57의2⑤ 3호)	취 득 세	362,667,180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08,451,300
36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51,035,010
		취 득 세	51,035,010
37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2018.12.31.까지는 200만원 한도로 2019.12.31까지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47,242,630
		취 득 세	47,242,630
		－	
38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667,600
		자동차세	667,6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3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9,506,060
		취 득 세	9,506,060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5,103,490
4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13,442,700
		취 득 세	13,442,700
41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소 계	20,533,220
		취 득 세	20,533,220
		-	
4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의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10,128,480
		취 득 세	6,719,210
		재 산 세	3,409,27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999,090
		재 산 세	999,090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국 가		합 계	986,885,840
44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986,868,260
		취 득 세	59,791,640
		등록면허세	1,240,400
		주 민 세	1,500,000
		재 산 세	916,879,190
		자동차세	2,184,730
		지역자원시설세	5,272,300
45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7,580
		지역자원시설세	17,580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외 국		합 계	50,000
46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소 계	50,000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주 민 세	50,000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③)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기 타		합 계	143,213,880
46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6,824,300
		재 산 세	5,479,380
		지역자원시설세	1,344,920
		-	
47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89,244,220
		취 득 세	89,244,220
48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11,235,420
		취 득 세	11,235,420
4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7,261,930
		취 득 세	7,261,930
		-	
5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소 계	23,320,130
		취 득 세	953,110
		등록면허세	1,120,500
		자동차세	21,246,52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8년(결산)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 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51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1,123,960
		지역자원시설세	1,123,960
		-	
52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856,270
		재산세	766,910
		지역자원시설세	89,360
		-	
53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2,044,690
		재산세	2,044,690
		-	
54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404,810
		재산세	404,810
55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898,150
		등록면허세	27,600
		주민세	208,950
		재산세	394,900
		자동차세	264,450
		지역자원시설세	2,250